

〈논문〉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가능성 검토

柳 光 海*

요 약

우리 행정소송법 제10조는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관련청구소송의 분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관련청구소송의 분리가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송경제, 심리의 모순·저축 방지, 신속한 재판이라는 관련청구소송 제도의 취지, 관련청구소송 제도의 활성화, 일부 취하 문제의 해결, 민사소송과의 일관성, 제소기간의 보호 등을 종합하면 관련청구소송의 분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관련청구소송이 분리되면, 관련청구소송이 행정소송인 경우 행정법원이 그대로 판단하면 되고,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다만 관련청구소송이 민사법원으로부터 그 이전에 이송되어온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이송이 금지되므로 어쩔 수 없이 행정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는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청구인 행정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더라도 당사자가 남아 있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측면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관련청구소송, 소의 병합, 소의 분리, 이송, 행정소송법 제10조

I. 서 론

행정소송법 제10조는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고, 나아가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병합하여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위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위 규정을 당사자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소송에도 준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는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제10조의 규정이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에도 준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이송·병합시키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달리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병합과 반대로, 행정소송에 이미 병합되어 있는 관련청구소송을 분리·이송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이다. 이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결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청구소송의 분리·이송을 허용할 현실적 필요성은 있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는지, 이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관련청구소송 일반론과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허용성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간략히 살펴 본 다음,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필요성 및 가능성, 분리 이후의 관할 및 이송의 문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청구소송 개괄

1. 관련청구소송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개념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에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같은 항 제2호에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각 준용되고 있고,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에도 준용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관련청구소송이란 행정소송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관련 행정소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관련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련]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¹⁾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관련성 여부 판단의 명확한 구분기준이 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결국 구체적 사안마다 관련성 인정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관련청구소송의 예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생활대책대상자 미선정 위법확인소송 내지 생활대책대상자 확인소송,²⁾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관련된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소송,³⁾ 토지수용의 재결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⁵⁾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위법사유가 모두 공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른 원고가 제기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⁶⁾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⁷⁾ 등이 있다.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고 그 소송이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민사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민사법원에서는 관련청구소송을 관련된 행정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관련청구소송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⁸⁾

반면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행정법원에서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민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⁹⁾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¹⁰⁾도 있다. 사건으로는 행정사건의 전속관할성에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
 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8)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7판, 박영사, 2013, 756면; 김동희, **행정법강의**, 신조사, 2013, 547면; 박군성, **행정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3, 812;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4판, 법문사, 2010, 696면;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2판, 박영사, 2013, 683면.
 9) 김동희, 앞의 책, 547면.
 10) 강수경, “행정소송법상 청구병합론 — 역병합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410면.

비추어 볼 때 입법론으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관련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이 이를 재이송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학자가 민사소송법 제38조를 들어 이를 부정한다.¹¹⁾

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소는 단일의 소와 병합의 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일의 소’라 함은 1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1개의 청구를 하는 가장 단순한 소의 형태이고, 이에 비하여 ‘병합의 소’라 함은 단일의 소가 물적 또는 인적으로 여러 개 결합된 것으로서, 1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소의 객관적 병합)와 수인의 원고가 또는 수인의 피고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소의 주관적 병합)가 있다.¹²⁾ 이러한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의 병합은 분리된 소를 병합의 소가 되도록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병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란 행정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합형태와 관련하여서는 주관적 병합과 객관적 병합, 원시적 병합과 추가적(후발적) 병합이 모두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

3.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가. 개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행정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미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을 행정소송과 분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를 어떤 용어로 표현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변론의 분리’라는 용어가 있고, 이는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청구가 여럿인 경우에 법

11)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757면; 김동희, 앞의 책, 547면; 박균성, 앞의 책, 812면; 정하중, 앞의 책, 696면.

1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2005, 99면.

13)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758면; 김동희, 앞의 책, 547면; 박균성, 앞의 책, 806면; 정하중, 앞의 책, 696면; 홍정선, 앞의 책, 683면.

원이 그 중 어느 청구를 분리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¹⁴⁾을 의미한다고 설명된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병합된 행정소송상의 청구와 관련청구소송상의 청구를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므로 결국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변론의 분리’의 일종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기왕에 행정소송법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관련청구의 변론 분리’라는 용어 대신 이 논문에서는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나. 문제영역

관련청구소송의 분리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된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② 각각의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었지만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병합한 경우, ③ 소송요건과 관련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분리하여 심리·재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주된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가. 판례

주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다수는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¹⁵⁾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인 경우에는 소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다소 예외적인 판례도 있다.¹⁶⁾

일본의 경우에는 다수의 재판례가 이 경우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독립한 소로 보아 스스로 심리하든지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라고

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386면.

1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16)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판시한 것이 있다고 한다.¹⁷⁾

나. 학설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주된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관련청구 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는 태도이지만, 여러 문헌에서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독립하여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 독립의 소로서 취급하여 심리 재판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소개되고 있고,¹⁸⁾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 구조를 취하게 된 이상 소송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¹⁹⁾가 있다.

일본의 경우 학설은 변론을 분리하여 청구마다 각각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종전의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독립의 소로 취급하는 것이 소송의 지연 및 소송제도상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소송경제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고 한다.²⁰⁾

2.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합된 경우

가. 판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되기 위해서는 양 소송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합한 경우 분리가능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을 각하한 하급심 판례도 있고,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취급한 판례도 있다고 한다.²¹⁾

17) 이홍훈,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308면.

18) 김의환, “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 청구로 병합되기 위한 요건, 나.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토지수용사건에 관련 청구로서 병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미2000하, 2438)”, **대법원 판례해설**, 제35호, 법원도서관, 2000, 454면;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147면.

19) 박균성,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분과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34권 제1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1999, 187면.

20) 이홍훈, 앞의 책, 308면.

21) 이홍훈, 앞의 책, 309면.

나. 학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을 독립한 소로 심리·재판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구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²²⁾

3. 분리하여 심리·재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가. 판례

주된 행정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고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심리·재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이를 분리할 수 있는가를 직접 다른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하였다.

나. 학설

학설의 경우에도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분리가 가능한지를 직접 다른 경우는 찾지 못하였다.

IV.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1. 관련청구소송 제도의 취지 검토

가.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의 허용취지

이 논문의 주제인 관련청구소송의 분리·이송과 관련하여 맨 먼저 드는 의문은 과연 관련청구소송의 분리·이송을 인정할 현실적 혹은 법리적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한 취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특히 그 병합이 인정되는 이유로는 관련되는 청구

22)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3, 214면; 이흥훈, 앞의 책, 309면.

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통일적으로 재판함으로써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심리의 중복·재판의 저축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²³⁾ 요약하면 소송경제, 재판의 모순·저축 방지, 신속한 재판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한편 행정소송법에서 모든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관련청구소송만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관련 없는 청구의 병합을 제한하여 행정사건의 절차지연, 심리의 복잡화 등의 폐해²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행정소송의 신속한 재판이 그 관련청구소송 제한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관련청구소송의 분리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에는 ① 소송경제, ② 재판의 모순·저축 방지, ③ 신속한 재판, 특히 행정소송의 신속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의 검토

소송경제란 법원이나 당사자의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소송의 이상이다.²⁵⁾ 행정소송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소송경제에 반할까?

먼저 주된 행정소송이 부적법할 경우를 살펴보면, 앞서 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은 행정소송이 부적법할 경우 관련청구소송까지 각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관련청구소송을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함은 물론이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소에 대한 기록 재작성, 새로운 심리의 시작 등 그 부담이 증가되었으면 증가되었지 감소되지는 아니한다. 반대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나 법원의 이러한 부담은 훨씬 감경된다.

이와 같이 주된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검토는 각각의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었지만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서 관련청구소송을 각하하는 것보다는 분리를 허용해서 독립의 소로 취급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

23)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758면.

24) 김의환, 앞의 논문, 450면.

2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증보판, 박영사, 2012, 25면.

마지막으로 소송요건과 관련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분리하여 심리·재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소송경제를 위해 당연히 분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이나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 재판의 모순·저촉 방지의 측면에서의 검토

관련된 재판 사이에 모순·저촉되는 결론이 아니라 통일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최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할 경우 재판의 모순·저촉 방지에 방해가 될까?

먼저 주된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주된 행정소송의 결론은 각하이므로 판결의 모순·저촉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었지만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병합한 경우 분리를 허용할 경우나 소송요건과 관련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분리하여 심리·재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판결의 모순·저촉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후행 사건의 담당 법관은 재판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행 판결의 결론을 자신의 판단자료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므로 판결 사이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경우의 문제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없이 양 소송이 애초부터 별도로 진행될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므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라. 신속한 재판, 특히 행정사건의 신속한 재판의 측면에서의 검토

신속한 재판 내지 소송촉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법원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다.²⁶⁾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반할까?

먼저 주된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경우를 본다. 앞서 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과 같이 행정사건이 각하되어서 관련청구사건도 함께 각하되

26) 이시윤, 앞의 책, 24-25면.

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청구소송을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제기할 것이므로 그만큼 재판의 지연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사건을 각하하더라도 관련청구사건을 분리하여 그대로 재판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의 원리에 부합한다.

다음 각각의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었지만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병합한 경우나 소송요건과 관련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분리하여 심리·재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분리를 허용하면 신속한 재판의 원리에 반하는지를 보면, 행정사건의 결론은 도출되었는데 관련청구사건의 결론 도출을 위해 그 심리가 더 필요한 경우 관련청구사건의 분리를 허용하여 행정사건만의 판결을 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의 원리에 부합하면 하지 그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중간확인 소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반대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제한하여 관련청구소송의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행정사건의 판결을 미루는 것은 행정사건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신속한 재판, 특히 행정사건의 신속한 재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마. 소결

결론적으로 소송경제, 심리의 모순·저축 방지, 신속한 재판의 원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이 관련청구소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2. 관련청구소송 제도 활성화의 측면에서의 검토

가. 검토의 필요성

행정소송법상의 관련청구소송 제도는 소송경제, 판결의 모순·저축 방지, 신속한 재판이라는 소송의 이상에 부합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여도 좋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관련청구소송 제도가 문제가 있다든지 관련청구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주장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관련청구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관련청구소송’을 주제로 판례를 검색할 경우²⁷⁾ 대법원 판례가 5건, 고등법원 판례가 3건, 하급심 판례가 1건, 합계 9건

의 판례가 검색될 뿐이다. 이러한 검색결과는 관련청구소송제도가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청구소송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이 논문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허용 여부가 관련청구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저해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허용이 관련청구소송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앞서 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과 같이 행정사건이 각하될 경우 관련청구사건도 함께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를 경우, 소송당사자는 행정사건의 각하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시키기보다는 별도의 소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각하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합을 요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행정사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한다면 당사자는 각하의 위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요구하여 신속하고 모순 없는 판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행정소송의 심리가 종결된 상태에서 관련청구소송의 심리만 남은 상태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여 행정소송의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판결은 관련청구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소정의 기속력 등 당사자에게 유리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만의 판단을 빨리 받고자 한다면 소의 분리를 요구하면 된다. 반대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을 빨리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요구하길 꺼리게 된다.

결국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이 현행 관련청구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반대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불허하는 것은 현행 관련청구소송의 활성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부 취하의 경우의 문제점 검토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소의 일부 취하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7)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389843898760>.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고,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소의 일부 취하를 금지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일부 취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일부 취하는 허용될 수 있을까? 앞서 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과 같이 행정사건이 각하될 경우 관련청구사건도 함께 각하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일관할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허용되기 힘들다. 관련청구소송의 처리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할 경우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아니한다. 행정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분리한 다음 행정소송만 취하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취하의 경우를 보더라도 관련청구소송의 분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 법리 일관성 측면에서의 검토

가. 일관된 법리의 정립 필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의 운용방식과 민사소송법의 운용방식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치하는 것이 법 이론적 일관성의 측면에서 보나 국민의 소송접근성의 측면에서 보나 바람직하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별다른 근거 없이 행정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소송상의 불의타가 될 수 있다. 앞서 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과 같이 행정소송이 각하된다고 하여 관련청구사건도 그대로 각하하는 것이 불의타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소의 분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행정소송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민사소송과의 법리 일관성의 측면 검토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변론의 분리’라 함은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청구가 여럿인 경우에 법원이 그중 어느 청구를 분리하

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²⁸⁾ 즉 민사소송에서는 소의 분리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²⁹⁾ 특히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민사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행정사건을 분리하여 이송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³⁰⁾

그렇다면 행정소송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불허할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까? 먼저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관할의 문제나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관련청구소송을 분리할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먼저 행정법원이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의 문제가 생기고, 다음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경우 재이송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들도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불허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의 분리를 허용함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 오히려 법 이론적 일관성을 통한 불의타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와 당사자소송인 경우의 차별적 법리 문제 검토

(1) 대법원의 일반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은 행정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 관련청구사건도 그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관련청구소송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당사자소송인 경우의 검토

그런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은 이와 달리 특수한 판시를 하였다. 즉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행정소송법 제

2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386면.

2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2005, 64면.

30) 안철상, “실무연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법조**, 제57권 제1호, 법조협회, 2008, 354면.

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련 청구로서 병합한 경우 위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다면 당사자는 위 당사자소송의 병합청구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초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인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변경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이 왜 이와 같이 특수한 판시를 하여야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으로는 위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의 사안은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이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된 사안인데 여기서 문제된 당사자소송은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법’이라고 한다.)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한 소송으로 구 광주민주화법 제15조에 의하면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만약 위 당사자소송을 각하할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당사자의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수한 판시를 한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그런데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위 사안의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시키면 해결된다. 이때 소변경된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맨처음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소변경된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으로 제기된 당사자소송은 중복제소가 되는데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후소인 관련청구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을 분리하여 각하하면 된다.

이와 같이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면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해결 방법이 있는 반면,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불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일관할 경우에는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의 사안과 같이 관련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제소기한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논리가 필요하게 된다.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논리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아니면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각하’ 사유인지, 아니면 ‘소변경’ 사유인지를 달리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예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면서 일관된 법리로 해결해 나가

는 것이 법 이론적 일관성의 측면이나 국민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이나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라. 관련청구소송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취소소송인 경우의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청구소송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일반 법리의 일관성을 버리고 특수한 법리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관련청구소송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고 또 소변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항고소송인 경우에는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 앞서 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과 같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충실할 경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앞서 본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과 같이 소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면, 우선 원시적으로 병합제기된 경우 소변경신청 자체가 없으므로 소변경이 허용될 여지가 없음은 물론, 소변경에 관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취소소송 외의 다른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정의 소변경도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소변경 신청이 없는 이상 소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결국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개의 소로 제기하였더라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단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양자의 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각하되어 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이 문제는 소의 분리를 허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분리한 후 판단하면 그만이다.

5.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련청구소송 제도의 취지, 관련청구소송의 활성화의 필요성, 일부 취하의 문제점 해소,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상관없는 법 이론적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V. 관련청구소송의 분리 이후의 관할 및 이송의 검토

1. 서

위에서 행정소송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청구소송을 분리할 경우 그 이후의 관할 및 이송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는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 분리된 민사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에게 관할권이 있는지, 관할권이 없다면 이송은 가능한지,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재이송금지 규정의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관할의 검토

관련청구소송이 행정소송인 경우 관련청구소송을 분리하여도 관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법원은 그대로 분리된 행정소송에 대해 판단을 하면 된다. 문제는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이다.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 관련청구소송을 분리하면 행정법원에서 민사소송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행정법원이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행정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보면서³¹⁾ 다만 최근 판례에서 변론관할이 성립하는 경우 행정법원이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본 경우³²⁾가 있다.

학자들 중에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가 행정소송의 제1심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 구조를 취하게 된 이상 소송경제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³³⁾는 견해가 있다.

3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

3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33)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행정소송실무편람**,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생각전대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판단하고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관할을 정한 것은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직분관할로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³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법원은 분리된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이송의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리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 행정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관할이 없게 된다. 이 경우 행정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므로, 행정법원은 이를 민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원칙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³⁵⁾ 소송경제나 신속한 재판의 원리에 비추어 각하하는 것보다는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검토하여야 할 문제는 재이송의 문제이다.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고 민사법원에서 이송되어와 관련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에 병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된 경우 행정법원이 민사법원으로 분리된 민사소송을 재이송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민사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이송받은 사건의 재이송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법원이 분리된 민사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³⁶⁾ 유사한 경우로 가사소송의 경우가 있는데, 민사법원에서 이송받은 사건이 검토 결과 민사소송에 해당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³⁷⁾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이송·병합된 민사소송에 대하여도 행정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³⁸⁾

60면; 박균성, 앞의 논문, 187면.

3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37면.

3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36) 한편 행정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 민사소송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는 논란이 있다. 민사소송이 민사법원의 전속관할이라면 관련청구의 분리 후 행정법원이 분리된 민사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전속관할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법원행정처, 1994, 34면.

38) 다만, 민사소송법상 재이송금지는 관할 위반으로 인한 반복적인 관할법원의 변경을 막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관련청구의 병합을 위해 이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이송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한편 이 규정을 이유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가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나 전속관할 여부에 상관없이 재이송을 금지하는 민사소송법상 일반규정에 따른 효력의 결과이므로 이 규정 때문에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4. 소결

결국 관련청구소송이 분리되더라도 관할이나 이송에 장애되는 요인은 없다. 관련청구소송이 행정소송인 경우 행정법원이 그대로 판단하면 되고,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 이송하여야 하나 민사법원으로부터 그 이전에 이송되어온 경우에는 재이송이 금지되므로 행정법원에서 판단하면 된다.

VI. 결 론

우리 행정소송법 제10조는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관련청구소송의 분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관련청구소송의 분리가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면 관련청구소송 제도를 둔 취지인 소송경제, 심리의 모순·저축 방지, 신속한 재판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점,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를 허용하는 것이 관련청구소송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행정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행정소송 혹은 관련청구소송만의 일부 취하지 발생가능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소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관련청구소송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당사자 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관된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관련청구소송이 분리된 이후의 소송경과를 검토해 보면, 관련청구소송이 행정소송인 경우 행정법원이 그대로 판단하면 되고,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다만 관련청구소송이 민사법원으로부터

있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이송되어온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이송이 금지되므로 어쩔 수 없이 행정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의 분리는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청구인 행정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더라도 남아 있는 관련 청구소송에 대한 판단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투고일 2014. 1. 30	심사완료일 2014. 5. 28	계재확정일 2014. 5. 30
-----------------	-------------------	-------------------

참고문헌

- 강수경, “행정소송법상 청구병합론 — 역병합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7판, 박영사, 2013.
- 김동희, **행정법강의**, 신조사, 2013.
- 김의환, “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 청구로 병합되기 위한 요건, 나.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토지수용사건에 관련 청구로서 병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미2000하, 2438)”, **대법원 판례해설**, 제35호, 법원도서관, 2000.
- 김철용·최광률 편집,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 박규성,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분과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34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_____, **행정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3.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법원행정처, 1994.
- _____,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법원행정처, 2005.
- _____,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법원행정처, 2005.
-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행정소송실무편람**,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 신만중,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08.
- 안철상, “실무연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법조**, 제57권 제1호, 법조협회, 2008.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증보판, 박영사, 2012.
- 이재성,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관련청구의 병합”, **법조**, 제23권 제2호, 법조협회, 1974.
-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4판, 법문사, 2010.
-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2판, 박영사,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Separation of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yu, Kwang-Hae*

The Article 10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escribes only transfer and consolidation of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without prescribing separation of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I think the Supreme Court has negative perception on the separation of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But I think it is better the separation of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to be permitted, considering the meanings of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system that can be explained as litigation economy, prevention of contradiction between judgments and rapid trial. And I think so, considering activation of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prevention problems that is occurred when a suit is partially withdrawn, legal consistency with Civil Procedure Act, and protecting the plaintiff about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When the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is separated from the main administrative claim, if the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is administrative claim, it is fair the administrative court judge the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If the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is a civil claim, the administrative court should transfer it to the civil court. But if the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was transferred formerly from the civil court, the administrative court should judge because of the Article 38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prohibits re-transferring.

In conclusion, I think it is better to permit the separation of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and I think there are no matters in separate the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Keywords: litigation for related claim, consolidation of claims, transfer of claim, separation of claims, Article 10 of the Korean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 Associat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